

챌린저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

시행일: 2017년 11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가리비 채취 금지 및 카이코우라 지진 패류 채취 금지 - 내지 구역도 참조



휴대폰으로 규정을 확인해 볼까요?

무료 문자 서비스 이용

무료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어패류 포획 채취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이 중요한 이유

어패류 포획 채취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옥외활동의 하나입니다. 매년 뉴질랜드 사람들은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다량의 어패류를 포획 채취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1차산업부(MPI)는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을 수립합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이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게 포획 채취를 함으로써 수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합니다.

규정에서 다루는 내용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1일 수량 한도(잡아갈 수 있는 수량)
- 법정 허용 크기(잡아갈 수 있는 크기)
- 종류 제한(잡아갈 수 있는 종류)
- 폐쇄 구역 및 제한 구역(잡을 수 있는 지역)

유의사항:

- 잡은 어패류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규정을 위반하면 기소, 벌금, 재산 압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한도 규정은 실제로 나서서 물고기나 닭새우, 패류를 잡은 사람에게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불필요하게 걸려들었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1일 한도 초과 및 크기 미달, 그물코가 규격 미달인 그물로 잡은 것, 엉뚱하게 잘못 잡거나 부수적으로 딸려 잡힌 것)이 잡혔으면 설혹 죽었다 하더라도 즉시 그 장소에서 방류해야 합니다.

규정 확인 방법

이 안내 팸플릿은 챌린저 수자원 관리 구역(FMA)에 대한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의 요약 자료입니다. 이것은 안내용일 뿐이며 지역별 제한 조치나 인쇄일 이후의 개정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번 바다로 나갈 때마다 이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MPI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무료)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무료 문자 서비스, 무료 스마트폰 앱, MPI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팸플릿의 뒤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포획 채취

올바른 방식으로 어패류 취급

불필요하게 걸려들었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잡았을 때 올바르게 다루 방류하면 이것들이 죽지 않고 바다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충분한 크기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루고 방류할 때 유의할 점:

- 손(혹은 장갑)에 물을 묻혀 다루십시오.
- 부드럽게 다루십시오. 가급적 수면에 손을 가까이 대고 물 속으로 밀듯이 방류합니다.
- 가급적 잡은 장소 가까이에서 돌려보내십시오(특히 패류나 닭새우).
- 크기 미달 어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처음부터 잡지 않는 것입니다. 크기 미달 어류가 많이 잡히면 장소를 바꾼다거나 더 큰 낚시바늘이나 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으로나 MPI 사무소에 들러 '어류 취급 안내서'(Fish Handl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바닷새 안전

바닷새는 미끼와 물고기 조각을 잘 포착하므로 바늘에 걸리거나 낚시줄에 엉킬 수 있습니다.

바닷새가 달려들지 않게 하고 이들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www.southernseabirds.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1일 수량 한도 및 크기 제한

다음 어종을 모두 합쳐 혼합 한도로 1일 최대 20 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각 어종의 개별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지역별 제한이나 구역 폐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폐쇄 구역 및 제한 구역' 난을 확인하십시오.

어종	최소 허용 길이 (cm)	1일 수량 한도 (개인당)	최소 그물코 크기(mm)
청대구 - 챌린저 이스트 (말보로 사운드 구역 포함)	33(통고기 상태나 내장 제거 상태만 허용)	2*	100
청대구 - 챌린저 웨스트 (남섬 웨스트 코스트)	33	20	고정그물 금지
블루 모키(Blue Moki)	40	20	114
블루노즈(Bluenose)	-	5	160
버터피시/그린본 (Butterfish/Greenbone)	35	20	108
엘레펀트 피시 (Elephant Fish)	-	20	150
납작치	25	20	100
송어(Grey Mullet)	-	20	100
존도리(John Dory)	-	20	100
카하와이(Kahawai)	-	20	100
홍대구	25	20	100
레드 거나드(Red Gurnard)	25	20	100
레드 모키(Red Moki)	40	20	114
레몬피시(Rig)	-	20	150
참상아리(School Shark)	-	20	150
타라키히(Tarakihi)	25	20	100
트레발리(Trevally)	25	20	100

* 챌린저 이스트 구역(말보로 사운드 구역 포함)에서는 어느 날에든 이 구역에서 하루 2 마리를 초과해 잡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대 4 마리까지 청대구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조치는 챌린저 이스트 구역 바깥에서 청대구를 잡아 챌린저 이스트 구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자 할 경우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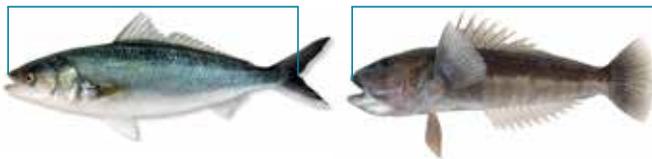
그 외에도 다음 어종을 추가로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어종	최소 허용 길이(cm)	1일 수량 한도 (개인당)	최소 그물코 크기 (mm)
장어	-	6	12
동갈치(Garfish/Piper), 정어리 (Pilchard), 청어, 노란눈송어 (Yellow Eyed Mullet)	-	한도 없음	25
그로퍼/하푸쿠/배스 (Groper/Hapuku/Bass)	-	최대 3 마리의 부시리를 포함해 1일 총 5 마리	160
부시리(Kingfish)	75	-	100
다금바리(Sea Perch)	-	한도 없음	100
도미 - 챌린저	25	10	100
도미 - 말보로 사운드 구역	25	3*	100
트럼피터(Trumpeter)	35	한도 없음	100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타 어종	-	한도 없음	100

*도미 한도 10 마리 가운데 3 마리는 말보로 사운드 구역에서 잡을 수 있는 하위 한도입니다.

물고기 길이 재기

코 끝에서 꼬리지느러미가 갈라진 'V' 부분까지를 잽니다.



물고기 포획 제한

주낙 방식(Line fishing) 제한

주낙(Long line)과 선주낙(Dahn/Drop line)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대낙기나 손낙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낙 방식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주낙줄은 1 줄을 초과해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 합니다(대낙기/손낙기 줄 제외).
- 25개를 초과하는 낚시바늘이 달린 주낙줄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 합니다.
- 2인 또는 그 이상이 배에서 주낙줄(대낙기 줄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2 줄(대낙기 줄 제외)을 사용, 선상 설치, 소지할 수 있습니다.

- 주낙줄 양쪽 끝에 하나씩 다는 부표에는 주인 이름 첫 글자와 성을 뚜렷하게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도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말보로 사운드 구역 대낙기/손낙기 줄 제한

말보로 사운드 구역에서 낚시를 할 때 어떤 어종에 대해서도 대낙기 줄(또는 손낙기 줄) 하나당 2개를 초과해 낚시바늘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물 제한

고정그물(Set net), 자루그물(Fyke net), 끌그물(Drag net)을 포함한 모든 그물이 해당됩니다. 그물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언제라도 1개를 초과해 끌그물이나 고정그물, 자루그물, 기타 다른 그물을 치거나 소지하지 못 합니다(뜯채그물 제외).
- 그물은 손으로만 끌어당겨야 합니다.
- 밀물, 썰물 때를 막론하고 강, 개울, 수로, 후미, 사운드의 수면 폭을 1/4 이상 가로질러 그물 1개나 여러 개를 연결해 쳐서는 안 됩니다.
- 미끼로 유인하는 그물을 치거나 사용하지 못 합니다(자루그물 제외).
- 그물에 뺨침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자루그물 제외).

끌그물(Drag net)

끌그물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길이가 4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낚줄의 총 길이가 20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정그물(Set net)

고정그물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길이가 6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그물로부터 60m 이내에 쳐서는 안 됩니다.
- 주인 이름 첫 글자와 성을 뚜렷하게 표시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해둔 부표를 양쪽 그물 끝에 하나씩 달아야 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도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루그물에는 부표가 하나만 필요)
- 선상에서 고정그물은 하나만 두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 잡이용으로 추가 그물을 사용 가능한데 길이가 10m 미만이고 그물코 크기가 최대 50mm여야 함)
- 썰물 때 물고기가 바다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방식으로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패류

1일 수량 한도 및 크기 제한

패류는 봉지나 그 비슷한 용기에 담아 패류가 바다로 되돌아갈 수 없게 해둔 상태라면 잡은 것입니다. 채취 도중의 어느 시점이라도 1일 수량 한도를 초과해 소지하지 못 합니다.

지역별 제한이나 구역 폐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폐쇄 구역 및 제한 구역' 난을 확인하십시오. 패류 채취 및 소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개인당 1일 수량 한도	최소 허용 크기(mm)
새조개(Cockle)	150	제한 없음
키나(성게)	50	제한 없음
홍합	50	제한 없음
굴 - 드레지 굴(Dredge)*	50	58
- 바위굴 & 참굴(Rock & Pacific)	250	제한 없음
전복 - 일반종	10	125
- 황전복(Yellow foot)	10	80
피피(Pipi)	150	제한 없음
가리비*	50	90
토헤로아(Toheroa)	금지	금지
투아투아(Tuatua)	150	제한 없음
기타(혼합)*	50	제한 없음

- * 잠수부가 굴과 가리비를 채취할 때 선상에서 잠수부 안전을 지원하는 인원의 몫으로 본인 외 최대 2명에 대한 한도를 추가 채취할 수 있는 제한적 규정이 있습니다.
- 이것은 각 채취 종류를 모두 더한 혼합 한도입니다. 이것은 위 표에 특정되지 않은 모든 종류에 적용되며, 갯조개, 갯가사리, 다슬기, 소라, 따개비, 민물 가재(코우라) 등이 포함됩니다.

패류는 크기를 잽 수 있는 상태로 건져 올려야 합니다

최소 크기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패류(전복, 가리비, 드레지 굴 등)는 껍질 채 건져 올려야 하며 평균 최고 수위점 아래에서 탈각할 수 없습니다. 패류를 소지하고 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드레지 굴과 가리비는 채취 후 선상에서 바로 먹기 위해 탈각해도 됩니다. 먹은 가리비와 드레지 굴은 1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먹지 않은 가리비와 드레지 굴은 껍질 채 육지에 가져와야 합니다.

전복 누적 한도

2일이나 그 이상 동안 전복을 잡을 경우에는 적법하게 잡았고, 또 어느 날에든 1일 한도를 초과해 잡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많게는 전복 20개 또는 전복살 2.5kg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패류 크기 재기

전복: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을 직선으로 잽니다. 껍질 등쪽을 따라 곡선으로 재지 마십시오.

가리비: 껍질의 가장 긴 지름을 잽니다.



드레지 굴(Dredge oyster): 58mm 구경의 원형 금속 고리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패류 채취 제한

스쿠버 장비(UBA)

- 스노클링 장비는 UB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UBA를 사용해 전복을 잡지 못 합니다.
- UBA를 소지한 상태에서 전복을 소지하지 못 합니다. 배와 차량 안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취 시준

- **굴:** 굴은 연중 채취할 수 있습니다. (바위굴과 참굴은 서식 물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살만 발라내서는 안 됨)
- **가리비:** 일부 구역에서 가리비 채취가 금지됩니다. 아래 구역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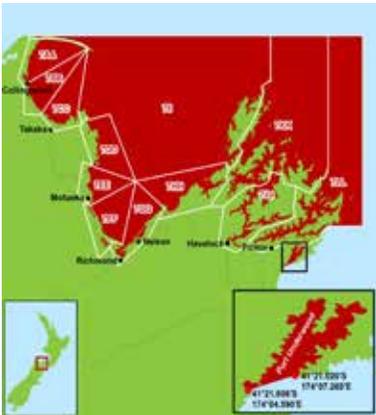
흑산호 보호

흑산호를 가져가거나 소지하지 못 합니다.

카이코우라 지진 패류 채취 금지

구역도 5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패류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가리비 채취 금지 구역



2017년 7월 15일부터 추후 별도 공고가 있을 때까지 말보로 사운드, 타스만 베이, 골든 베이, 포트 언더우드에는 가리비 채취가 금지됩니다.

닭새우(Rock Lobster)

1일 수량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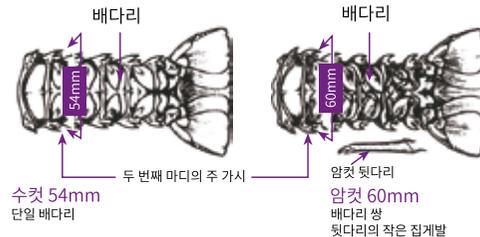
하루에 6마리(두 종류 혼합)를 초과해 닭새우를 포획하거나 소지하지 못 합니다.

평균 최고 수위점 아래에서 크기 측정 불능 상태로 닭새우를 소지하지 못 합니다.

가시 닭새우(Spiny rock lobster) 최소 허용 크기

복부 두 번째 마디의 양쪽에 있는 큰 가시 끝단 사이의 너비를 직선으로 잽니다.

암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60mm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팩호스 닭새우(Packhorse lobster) 최소 허용 크기

복부 첫 마디에 있는 석회 바 뒤에서 중간 꼬리 끝까지 직선으로 복부 아래쪽 길이를 잽니다.

복부 길이는 암수 구분 없이 최소한 216mm 여야 합니다.



닭새우 포획 제한

보호 대상인 닭새우

다음과 같은 닭새우는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므로 즉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 크기 미달 닭새우
- 체외 알을 품고 있는(복부 아래쪽 배다리 사이에 품음) 암컷 닭새우
- 부드러운 껍질 단계인 닭새우
- 크기를 잽 수 없는 닭새우(예: 복부 손상으로 정확히 잽 수 없을 때)

일반적 제한

닭새우를 잡아도 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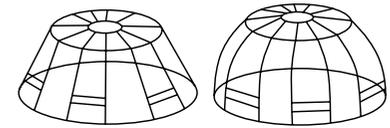
- 최고 수위점 아래에서 크기 측정 불능 상태로 닭새우를 소지하지 못 합니다.
- 손으로 조작하는 고리나 올가미만 사용해야 합니다. 스프링이 장착된 고리나 올가미는 금지됩니다.
- 닭새우를 잡을 때 작살을 사용하거나 껍질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몸통이 관통된 닭새우를 소지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 체외 알을 품는 부속지나 그 체외 알을 닭새우에게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닭새우 포획 제한(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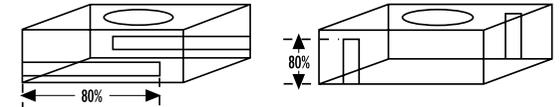
닭새우 통발

닭새우 통발은 미끼를 쓰든 쓰지 않든 닭새우를 포획하거나 포획 후 임시로 보관하는 기능을 가진 여하한 통 형태의 용기를 의미하며 닭새우를 포획, 임시 보관 또는 저장하게 제작된 기타 모든 기구를 포함합니다. 모든 닭새우 통발은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크기 미달의 닭새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구멍입니다. 통발 윗면이나 바닥면에 탈출구를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탈출구는 내부 치수가 적어도 54mm x 200mm여야 합니다.

등글거나 벌집 모양의 통발: 통발 아가리 이외에 적어도 3개의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각형 통발: 통발 아가리 이외에 서로 마주 보는 위치로 적어도 2개의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탈출구는 해당 통발 면 높이나 길이의 80%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망 통발: 오직 최소 내부 치수가 54mm x 140mm인 비개조 점 용접식 망으로만 만든 통발은 별도의 탈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주보는 양면의 어느 쪽에서든 면 높이의 80% 이상이 막히지 않는 한, 뚜껑이나 덮개로 망 통발을 가려놓을 수 있습니다.

통발

통발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1인당 하루에 최대 3개까지 통발을 사용, 설치, 소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통발과 부표에는 주인 이름 첫 글자와 성을 뚜렷하게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해두어야 합니다.
- 2인 또는 그 이상이 배를 탄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6개까지 통발을 사용, 설치,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단 통발에 이름을 표시하고 1인당 3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닭새우를 잡는 데 미끼망이나 링 통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름 표시나 통발 개수 제한 같은 기타 모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닭새우를 잡는 통발에는 탈출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상기 설명 참조).
- 용도별로 특수 통발(대구 통발, 계 통발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발에는 탈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지만 이름 표시나 통발 개수 제한 같은 기타 모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폐쇄 구역 및 제한 구역

제한 구역

제한 구역은 특정한 포획 채취 방식(예: 고정그물)이 제한되거나 수량 한도가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구역입니다. 아래에 제한 구역 중 일부가 예시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내용일 뿐이므로 가까운 MPI 사무소에 문의해 지역별 제한 조치나 최근 구역 폐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청대구 포획 제한 구역

구역 1: 챌린저 이스트 구역(말보로 사운드 구역 포함):

말보로 사운드 구역만 폐쇄: 매년 9월 1일 ~ 12월 19일

1일 한도: 1인당 2 마리

챌린저 이스트 구역(말보로 사운드 구역 포함)에서는 어느 날에든 이 구역에서 하루 2마리를 초과해 잡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대 4 마리까지 청대구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조치는 챌린저 이스트 구역 바깥에서 청대구를 잡아 챌린저 이스트 구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할 경우 적용됩니다.

크기 제한: 최소 33cm

통고기 상태나 내장만 제거한 상태여야 합니다.

추가 제한 조치:

- 즉시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대구의 살만 발라내서는 안됩니다. 먹은 청대구는 1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말보로 사운드 구역 폐쇄 기간 중 챌린저 이스트 구역에서 말보로 사운드 구역으로 청대구를 가져 들어올 수 있지만 어디서 잡은 것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안 별장이나 선상에 머무는 사람도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며, 통고기 상태나 내장 제거 상태로만 1일 2마리의 청대구를 소지하거나 해상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 말보로 사운드 구역에서 낚시를 할 때 어떤 어종에 대해서도 낚시줄 하나당 2개를 초과해 낚시바늘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주낙줄 제외).



챌린저 이스트(말보로 사운드 구역 포함) 제한 구역
구분
■ 챌린저 이스트 구역
■ 말보로 사운드 구역



구역 2: 모드 아일랜드 폐쇄 구역

구역 2: 모드 아일랜드 구역

연중 폐쇄.

어떤 어종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습니다.

남위 40 59.92	동경 173 54.14
남위 41 01.70	동경 173 55.34
남위 41 02.75	동경 173 54.75
남위 41 02.21	동경 173 52.08
남위 41 01.21	동경 173 51.75

고정그물 제한

구역도 1: 케이프 잭슨에서 클라렌스 강까지는 고정그물이 전면 금지됩니다(연안 4 해리 안의 수역과 전체 퀴살롯 사운드, 토리 채널, 포트 언더우드, 클라우디 베이, 클리포드 베이, 케이프 캠벨을 포함).

구역도 2: 페어웰 스피트에서 아와루아 포인트까지의 웨스트 코스트에서는 고정그물이 전면 금지됩니다(연안 2 해리 안의 수역). 좌표는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구역도 1: 고정그물 금지 구역



구역도 2: 고정그물 금지 구역

- **적용 면제:** 웨스트 헤드 포인트(루아카카 베이)와 디펜베치 포인트 사이를 잇는 선 안쪽의 퀴살롯 사운드 - **구역도 3**에서 빨간색 부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작치 고정그물만 해당(최대 9 코 깊이, 양쪽 끝에 앵커 부착, 총 길이 최대 60m, 그물코 크기 최소 100mm, 모노필라멘트 직경 0.35mm 미만인 그물)
- **적용 면제:** 황아누이/웨스트헤이븐 인렛

- 항상 그물 옆에 지키고 있어야 하며,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는 케이프 잭슨, 라랑이, 포트 언더우드, 케이프 캠벨, 니들스 포인트로 이어지는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점에 그물을 쳐야 합니다. (**구역도 3**에서 자주색 선 참조).

구역도 3: 최대 9 코 높이, 크물코 크기 최소 100mm에 바다 밑바닥과 반드시 맞게 부설한 고정그물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한 조치는 다음 구역에 적용됩니다(**구역도 3**에서 **파란색 부분**).

펠로러스 사운드: 타웨로 포인트와 오파니-아푸타 포인트 사이를 잇는 선 안쪽.

테니스 인렛과 헬럼 코브: 쉽 포인트와 캐멀 포인트, 크레고 포인트 사이를 잇는 선 안쪽.

크로이슬리스 하버: 케이프 수치스에서 섬 바깥으로 카카호 포인트까지 잇는 선 안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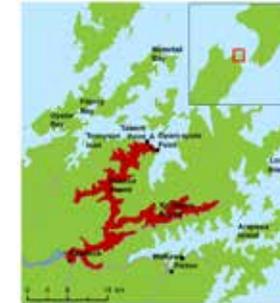
케네푸루 사운드 내: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정그물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구역도 3: 고정그물 제한 구역

고정주낙 제한 구역

구역도 4: 타웨로 포인트와 오파니-아푸타 포인트 사이를 잇는 선 안쪽의 펠로러스 사운드와 케네푸루 사운드에서는 고정주낙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역도 4: 고정주낙 제한 구역

카이코우라 지진 패류 채취 금지

마펠스 비치에서 콘웨이 강 사이는 패류와 해초류 채취 금지 구역입니다(닭새우와 스크램피 새우 제외). 구역도 5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 이 금지 조치는 2016년 11월에 발생한 카이코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합니다.

가리비 채취 금지

‘패류 채취 제한’ 아래의 구역도를 참조하십시오.

폐쇄 구역

폐쇄 구역은 어패류 포획 채취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MPI가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거나 환경보존부(DOC)가 해양보호구(Marine reserve)로 지정한 곳일 수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OC에 문의하십시오.

챌린저 FMA 폐쇄 구역: 롱 아일랜드 해양보호구, 통아일랜드 해양보호구, 호로이랑이 해양보호구, 황아누이/웨스트헤이븐 인렛 해양보호구, 퀸살롯 사운드 더블 코브.



더블 코브 폐쇄 구역



호로이랑이 해양보호구



웨스트헤이븐 인렛 해양보호구



통아일랜드 해양보호구



롱 아일랜드 해양보호구



구역도 5: 마펠스 비치-콘웨이 강 금지 구역

불법 포획 채취 행위 신고

MPI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포획 채취 행위를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우리 주변의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불법 어로 행위, 1일 한도량을 초과하거나 규정 크기에 미달하는 어패류를 포획 채취하는 행위, 또는 잡은 어패류를 판매, 거래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부처드립니다.

몰래 포획 채취를 하거나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 또는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0800 4 POACHER (0800 476 224)로 신고하십시오.

뉴질랜드의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을 간단히 확인

이 안내 팸플릿은 챌린저 수자원 관리 구역(FMA)에 대한 어패류 포획 채취 규정의 요약 자료입니다. 이것은 안내용일 뿐이며 지역별 모든 제한 조치와 규정, 또는 인쇄일 이후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번 바다로 나갈 때마다 이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잡은 어패류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 9889번으로 단어 'app'을 문자로 보내거나 **또는 QR 코드**를 스캔해 무료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이 앱은 일단 내려받으면 이동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문자** 9889번으로 blue cod(청대구)나 paua(전복) 등과 같이 본인이 잡으려는 어패류 명칭을 보내면 법정 허용 크기와 수량 한도에 관한 정보가 문자로 회신됩니다.
- www.mpi.govt.nz/fishingrules** 방문
- recfishingteam@mpi.govt.nz**로 이메일을 보내 거주 지역의 어패류 포획 채취와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정기 수신하십시오.
- MPI Fisheries의 Facebook 페이지를 팔로잉 하십시오.



MPI Fisheries - 노스랜드
MPI Fisheries - 넬슨/말보로/카이코우라
MPI Fisheries - 캔터베리/웨스트랜드
MPI Fisheries - 오타고/사우스랜드

MPI 지역 사무소 문의처

넬슨 (03) 548 1069

118 Vickerman Street, Nelson

블레넘 (03) 579 1088

Marlborough Research Centre, Grovetown Park, State Highway 1, Blenheim

카이코우라 (03) 319 6570

114 Beach Road, Kaikoura

2017년 10월

New Zealand Government